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(가금류 등) 명령 발령 알림

1.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**일시 이동중지 명령**과 관련됩니다.
2. 우리 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, AI SOP에 따라 전국 가금 관련 시설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『**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**』 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.
* 일시이동중지는 ‘21.11.9.(화) 11:00부터 실시하되,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‘21.11.9.(화) 13:00부터 적용
3.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.
4. 따라서, 관련 기관, 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또한,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우리 부(농림축산검역본부)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,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(가금류 관련 농장·업체·축산차량 등)

-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(제한) 이행여부 점검
 - 시·군·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·도 AI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 담당부서에 결과 제출(1회/일), 해당 시도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의 이행사항을 집계하여 우리 부 AI 상황실(전자우편:fmdai@korea.kr)로 제출(1회/1일, 매 24시간 마다)

- (거점소독장소 지정)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,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(제한) 시행 중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·소독 실시
- 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,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
 - 시·도(시·군·구)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(방역감시과)에 KAHIS 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을 통해 권한을 받아 들 것
- 지자체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, 축산관계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처리시설 등), 가축시장(전통시장 포함) 및 가든형 식당 등에대하여 점검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(일시 이동중지 명령) 제4항에 따라 상황 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

□ 국방부 및 경찰청

-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실시여부 단속 협조
 -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군부대 및 경찰청에 사전 지원 및 협조 요청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방역본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
- 지자체가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KAHIS 조회 권한 부여
 -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는 사전에 KAHIS의 GPS 검색 권한 요청
- 지자체와는 별도로 명령대상 가금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여부를 지역별, 시간대별로 점검
 - 이동중지 해제 후 지자체 실적과 비교·분석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 여부를 확인,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1.12.(금)까지 우리 부에 제출
- GPS를 장착한 차량 및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된 내용 SMS 등을 활용한 안내

□ 농협중앙회

- 공동방제단을 활용,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(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등)에 대한 일제소독
 - 농협중앙회(축산방역부)에서는 매일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우리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(전자우편: fmdai@korea.kr)로 제출

□ 가금관련 협회, 농협중앙회 및 계열화 사업자

-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포함) 및 농가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·홍보(SMS 발송 등) 실시
 - 각 협회 및 계열화 사업자는 회원(소속)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 SMS 등을 통해 홍보 후 실적을 우리 부 AI 상황실(전자우편:fmdai@korea.kr)로 제출

- 붙임 1.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
 2. 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운영계획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수신기관

주무관	강호성	사무관	이재승	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	홍기성	방역정책국장	전결 2021. 11. 9. 박정훈
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 (2021. 11. 9.) 접수
 10235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57 팩스번호 044-863-9210 / 1zzibang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